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김기현 · 서지영  
김상훈 · 성일종 · 김장겸  
조은희 · 안철수 · 정동만  
김성원 · 조지연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 등).



##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한 후 남은 부분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수익금”을 “수익금(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는 부분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금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생긴 수익금으로 본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국고금의 운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⑤ 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,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제34조(국고금의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사용한 후 남은 부분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수익금(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는 부분은 제외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